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1월 2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1월13일) 상정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1월13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개정이유

- 기초생활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의 학비 지원에 대한 융자대상자 범위와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의 연체이자를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운영상 일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학자금 융자대상자 중·고등학교를 전문대학으로 조정함(안 제3조제1항제4호)
- 학자금 융자금액을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년 3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년 100만원을 전문대학이상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조정하고, 등록금의 융자는 1회를 원칙으로 한정함(안 제4조제3항)
- 융자금 연체이자를 년 15%에서 년 10%로 조정함(안 제4조제4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이자율 5% 근거는	○ 시중금리를 감안하였음
○ 융자금 연체현황은	○ 총 325건 16억원에 144건 2억4천만원이 연체임(30%)
○ 연체이자가 15%로 기간이 경과될 경우 원금보다 이자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 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의 요지

○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융자인 및 보증인이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감면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 하여 변제불가능으로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 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제57호
의결연월일	2002.12.24 (제101회)

제안년월일 : 2002년 12월 13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기초생활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이율은 일반융자 이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들에게는 부담이 되므로 시중금리보다 낮게 책정하여 본 조례의 목적과 같이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골자

-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년3퍼센트로 한다로 수정(안 제4조제4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항 "5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융자대상등) ① ~ ③(생략)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 반융자금의 이자는 <u>년5%</u> 로 하되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5조(융자대상등)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 ----- <u>년 5퍼센트</u> ----- ----- -----	제5조(융자대상등) ①~③(개정안과 같음) ④ ----- ----- <u>년 3퍼센트</u> ----- ----- -----

부천시조례 제1호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학자금”을 “전문대학이상의 학자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고등학교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고등학교는 50%이내인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교”를 “전문대학이상 신입생 및 전문대학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년3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년100만원”을 “대학생의 입학금, 등록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의 용자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 “5%”를 “~~5~~³퍼센트”로하고 “15%”를 “1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자대상) ① (생략)</p> <p>1. 및 2. (생략)</p> <p>3. <u>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u></p> <p>4. <u>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학자금</u></p> <p>5. (생략)</p> <p>② 제1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자 자녀로, <u>고등학교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B"학점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u></p> <p>③ (생략)</p> <p>제4조(용자금액등)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u>학자금 용자금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년3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년100만원을 한도로 용자를 실시하고 3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용자한다.</u> <u><후단 신설></u></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자금의 이자는 년 5%로 하되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항 공히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u>년15%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u>하여야 한다.</p>	<p>제3조(용자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1. 및 2. (현행과 같음)</p> <p>3. <u><삭제></u></p> <p>4. -----<u>전문대학이상의 학자금</u></p> <p>5. (현행과 같음)</p> <p>② ----- ----- <u>전문대학이상 신입생 및 전문대학이상</u>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용자금액등)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대학생의 입학금, 등록금</u> ----- <u>이 경우의 용자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u></p> <p>④ ----- <u>3퍼센트</u> ----- ----- <u>10퍼센트</u> -----</p>